

조선후기 綿紬塵 大房의 齋錢과 禮錢 운영*

- 護喪所 자료의 실증 분석 -

조영준**

1. 머리말
2. 면주전의 호상소와 자료
3. 『호상소상용책』과 잣돈 관리
4. 『호상소차하책』과 예전 관리
5. 회감 및 회록과 『호상소전장등록』
6. 맺음말

1. 머리말

조선후기 서울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流通은 크게 두 부류의 경제 주체에 의해 영위되었다. 하나는 市民과 貢人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宮屬이나 兵卒 등을 포함한 亂塵이다. 난전이 특권을 가지지 못한 반면 자유로운 상행위를 지향하였다면, 시민과 공인은 조달을 독점하는 권리를 가지는 대신 국역을 부담해야 했다. 조달이라는 권리와 국역이라는 의무는 모두 상인 개인에 의해 수행된 것이 아니라 단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시민은 市塵을 통해, 공인은 貢契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조달과 국역이라는 두 가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의 상인 단체는 지방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8021565).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부교수.

조선후기 지방의 대표적 상인 단체인 襍商이나 負商에게는 권리도 의무도 사실상 부여되지 않았으며,¹⁾ 개국 초기부터 국가에 대해 충성과 헌신을 하였다든 다소 상징적이고 느슨한 체계와 의협심이 작동할 뿐이었고,²⁾ 중앙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는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였다. 반면에 서울의 시전은 국초부터 왕실과 정부에 대한 납품을 담당하였으며,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대규모의 조달을 담당하는 공계와 더불어 도성의 근간이 되는 계층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행정구역상의 契 이름에도 시전의 명칭이 반영되어 강한 역사성을 띠게 되었다.³⁾

서울의 시전은 대외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결성되었지만, 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을 모으고 관리하는 대내적 체계도 갖추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공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⁴⁾ 구성원의 관리는 단체 내에서의 직책 설정과 정연한 위계 및 승진 과정 등을 통해서 확인되며, 멤버십의 획득과 상실이라는 가입과 탈퇴의 절차를 비롯하여, 그와 결부된 포상과 처벌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⁵⁾

그러한 검토의 과정에서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에 소장된 면주전 자료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대량의 장부와 문서가 현존하고 있어, 풍부한 기록을 통해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⁶⁾ 최근에는 각종의 장부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장부와 문서의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시전 내부의 각

1) 場稅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그 실체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2) 柳子厚, 1948 『朝鮮襍負商攷』, 正音社.

3) 조영준, 2021 『조선 후기 한성부의 방계(坊契)와 시전(市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서울역사중점연구 10), 서울역사편찬원, 69-104면.

4) 고동환, 2002 『조선후기 시전(市塵)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65-99면; 金東哲, 1993 『朝鮮後期 貢人研究』, 韓國研究院.

5) 조영준, 2016 『조선후기 서울 포전(布塵)의 인적 구성과 거래 실태: 삼베 구매 방식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2, 151-191면; 2020 『조선후기 綿紬塵의 멤버십 관리: 單子를 통해 본 入參의 실태』, 『古文書研究』 57, 243-274면; 2022 『조선후기 면주전의 인센티브 체계: 포상 및 처벌의 규정과 실제』, 『古文書研究』 60, 127-159면.

6) 須川英德, 2003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 綿紬塵文書を中心に』, 『史料館研究紀要』 34, 235-262면; 2010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塵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43-377면.

종 부서에 해당하는 所나 契는 어떤 위상을 점하였는지 등이 소상히 알려지기 시작하였다.⁷⁾ 민간을 상대로 한 상행위의 실상이 드러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정부나 왕실을 대상으로 한 조달의 양상⁸⁾이나 단체 내부의 멤버십 관련 사항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한 학술적 자산을 형성하게 되었다.

면주전의 조달 실태나 국역 부담의 양상, 가입과 탈퇴나 포상과 처벌 등에 대한 정보 못지않게 相互扶助의 실태가 장부 및 문서에 잘 남아 있다. 한국 역사에서 강조되는 전통 중의 하나인 相扶相助의 미덕이 상인 단체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인데,⁹⁾ 관혼상제 등 각종 의례 중에서 특히 강조되었던 喪禮 거행을 위한 자금 마련이 주요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의견상 드러난다. 하지만 望葬單子の 작성 실태를 통해 밝혀진 代望의 實例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면주전 구성원의 상호부조는 도덕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互惠的인 대응이 아닌, 철저할 정도로 미리 예상된, 계산적이고 互酬的인 특징을 보인다.¹⁰⁾ 따라서 면주전 구성원의 상호부조는 단순히 서로 돕고 의지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며, 이른바 共濟의 제도로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社員에 대한 회사의 복지 제도와의 상이하며, 보험의 성격과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7) 김미성, 2021a 『19세기 후반 면주전 契·所 단위 傳掌謄錄의 성격과 세부 명목』 『古文書研究』 58, 51-85면.

8) Owen Miller, 2007 “The silk merchants of the Myŏnjujŏ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ŏ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오언 밀러, 2010 『시전-국가 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 위기: 綿紬塵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79-397면.

9) 이는 지방의 보상이나 부상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른바 病救死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영준·심재우·양선아·전경목 역해, 2015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예산·덕산·면천·당진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 2019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저산팔읍 상무우사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조영준·고민정·오창현 역해, 2021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저산팔읍 상무좌사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10) 조영준, 2020 앞의 논문.

조선후기 상인단체의 상호부조가 賻儀의 측면에서 초보적으로 고찰된 이래,¹¹⁾ 면주전에 대한 심층 분석도 후속 연구로서 진행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는 면주전에서 장례와 관련하여 처리된 내역이 護喪所라는 특정의 부서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措備契, 白絲契, 水紬二所 등 여러 부서에 걸쳐서 균등하게 분산·관리된 양상이 관찰된다는 점이다.¹²⁾ 종래의 연구에서 호상소라는 명칭에만 주목한 것에서 더 나아가, 호상의 실체를 구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¹³⁾ 하지만 왜 굳이 그런 식으로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상호부조를 실현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궁극적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¹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면주전 내부의 각종 所와 契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속속들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해당 계와 소가 남긴 장부나 문서를 낱낱이 분석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개별 소와 계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 분석은 수행된 바 없다. 이 연구는 그러한 작업을 착수하기 위해, 우선 호상소라는 가장 직관적인 명칭으로 잘 알려진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현존하는 장부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양상 및 수지의 추이를 고찰하여 면주전 大房의 운영 실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형식적으로는 호상소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취하지만, 실상은 호상소, 조비계, 백사계, 수주이소 등을 아우르는 면주전 대방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달리 말하자면, 호상소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해 조비계, 백사계, 수주이소 등을 넘어선 이해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면주전 대방에서 관리한 齋錢과 禮錢의 두 가지에 주목하고

11) 조영준, 2012 『조선후기 조직의 賻儀와 경제적 성격』 『奎章閣』 40, 171-196면. 조선후기 상인 조직에서 실행된 상호부조의 특성에 대해서 일부 확인한 바 있으나, 서울과 지방, 관부와 민간 등 다양한 층위의 조직 간에 비교를 수행하기 위한 試論의 발췌 분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12) 김미성, 2021b 『조선후기 면주전의 장례 부조 대상과 방식』 『서울과 역사』 107, 99-140면; 2021a 앞의 논문.

13) 그간 호상소라는 명칭은 『外都庫完議』의 ‘助哀所’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성격으로 인식되어 왔다.

14) 護喪, 措備, 白絲, 水紬 등의 契·所 명칭에서도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일관성도 없다.

자 한다. 잣돈은 장례에 대한 부의와 관련되고, 예전은 가입이나 승진 등과 관련된다. 그런데 잣돈의 수취를 단순한 상호부조의 제도가 아닌 공제의 일환이었다고 본다면, 잣돈과 예전은 모두 멤버십 관리의 차원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잣돈이나 예전은 대방 및 호상소 운영의 중심을 이루는 키워드이므로, 호상소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에 각종의 부서에 대한 개별적 분석이 추가로 진전된다면, 면주전 전체의 운영 실태를 재구성하는 데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면주전의 호상소와 자료

가와이문고의 면주전 자료 중에서 표제에 호상소가 표기된 장부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上用冊이고, 다른 하나는 上下冊이며,¹⁵⁾ 나머지 하나는 傳掌謄錄이다. 상용책-차하책-전장등록이라는 장부 체계를 가지는 면주전의 부서로는 호상소 외에도 조비계, 백사계, 수주이소 등이 있었으며, 이는 受價冊-會計冊 등의 장부 체계를 가지는 吐絀契, 水絀契 등과 구별된다. 전자가 면주전 내부의 상호부조를 위한 부서라면, 후자는 納上이나 進排 등의 조달을 비롯한 면주전의 대외 거래를 담당한 부서였다. 이러한 장부 체계 및 부서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있으며, 장부의 현존 상황도 소상히 파악되기에 이르렀다.¹⁶⁾ 여기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호상소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자료의 현황을 자세히 소개한다.

먼저 살펴볼 자료는 『護喪所上用冊』이며, 표제는 『乙丑正月日護喪所上用冊』이라고 되어 있다. 『호상소상용책』은 표지 포함 총 96면 분량이며, 91면 분량이 기재되어 있다.¹⁷⁾ 작성 주체는 면주전의 大房이며, ‘上用’이 ‘받아서 쓴다’는 뜻이

15) ‘上下’는 이두로서 ‘차하’라고 읽는다.

16) 자료 상황의 소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바 있다.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1 『京都大學附屬 圖書館 所藏 河合文集 韓國典籍』, 『日本所在韓國典籍目録』, 231-268면; 須川英徳, 2003 앞의 논문; 김미성, 2021a 앞의 논문.

17) 기재된 분량을 기준으로, 『조비계상용책』은 101면, 『백사계상용책』은 35면, 『수주이소상

므로, 대방에서 호상소로부터 받아 쓴 내역을 기록한 장부에 해당한다. 대방의 입장에서는 수입 장부이지만, 호상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출 장부라고 할 수 있다.¹⁸⁾ 장부라고 하였지만, 일반적인 회계 기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일종의 臚錄에 해당하므로 臚簿라고 할 수 있다. 개별 문서의 기록을 옮겨 적고 확인하는 절차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⁹⁾ 『호상소상용책』의 건별 등서 양식은 면주전이 남긴 등록 유형의 여타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²⁰⁾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날짜와 '대방' 및 날인을 제외하면 단순히 1열 분량의 소략한 내역이 기재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²¹⁾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2열을 이상의 내역이 작성되었다.

최초로 등서된 내역이 1864년(甲子) 11월 5일자의 상용이고, 마지막 상용 내역은 1900년(庚子) 4월 21일자의 것이다. 무려 35년 4개월여 동안의 상용 내역이 개별 문서의 건별로, 다시 말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1865년에 면주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전의 기록이 燒失되었고,²²⁾ 20세기 들어서는 단체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므로,²³⁾ 『호상소상용책』은 사실상 缺落 없이 온전한 기록이라 하겠

용책』은 36면이다.

18) 이와 같은 표현의 상대성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자료 해제를 통해 2017년에 이미 학계에 소개한 바 있다.

19) 등록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정 날짜에 한 가지의 상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 날짜에 두 가지 이상의 상용 내역이 각각 등장하는 사례도 보이는데, 각기 별개의 건으로 처리되었다. 다시 말해,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통합하여 작성되지는 않았으며, 각각 대방 명의로 날인이 이루어졌다.

20) 가장 오른쪽의 열에 干支와 月日을 적고, 다음 열에 상용의 내역과 금액을 적은 다음, 그 다음 열에 '大房'이라고 적고 날인을 하는 형식이다. 이후 날짜의 상용 내역을 적을 때에는 이전에 날인된 곳 바로 아래에 다시 간지와 월일을 적으면서 시작하는 형식으로, 날짜와 날짜 사이의 기록이 1열씩 중첩되는 구조를 보인다. 조영준, 2022 앞의 논문, 130면.

21) 이러한 특징은 조비계, 백사계, 수주이소 등의 상용책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22) 『호상소상용책』의 표제에 '乙丑'(1865년)이라고 되어 있으며, 작성된 내역에 '甲子'(1864년) 11월 5일자의 상용 1건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상 1865년부터 기록이 시작되었다. 1864년 말에 면주전 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須川英德, 2010 앞의 논문, 362면.

23) 마지막으로 작성된 내역이 '庚子'(1900년) 4월 21일자인데, 그 이후에는 기록이 작성되지

다. 91면 분량에 불과한 자료에 수십 년 동안의 기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해마다 기입된 내역이 그리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일 지면에 기재된 내역에서도 글씨의 모양이나 먹빛 등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 이는 특정 인물이 장기에 걸쳐 등서를 전담하지는 않았고, 또한 주기적으로 일괄 등서한 것이 아니라, 건별로 그때그때 등서하였음을 의미한다.²⁴⁾

등서된 상용의 내역은 명목, 금액, 끝맺는 套式의 순서로 되어 있다. 개개의 건별로 말미의 투식은 ‘上用印’으로 모두 동일하며, 이는 “받아쓰는 것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²⁵⁾ 상용의 금액은 모두 동전으로 표기되었으며, 당대에 통용되던 常平通寶의 단위인 兩-錢-分이 사용되었다. 금액에 표기되는 모든 숫자가 갖은자로 이루어졌고, 단위로서의 ‘돈’을 ‘錢’ 대신에 ‘錢’으로 표기하였음은 통상의 회계기록과 마찬가지로이다.

작성의 주체가 면주전의 대방이라는 판단은 등서된 내역의 각각에 대한 확인이 면주전 대방에 의해 이루어졌음에 근거한 것이다. 장부의 작성자가 건별로 등서한 다음에 ‘대방’이라고 적고서 그 아래에 도장을 찍었다.²⁶⁾ 1896년(丙申) 3월까지의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5월부터는 붉은 색 인주로 날인되었다. 면주전이 남긴 다른 유형의 자료에서도 인주의 색상이 변경되는 시기가 유사하므로, 대방에 의해 각 부서의 장부가 공히 작성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작성되었으나 落帙되어 현존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한 바를 참조하면, 낙질되었다기보다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기능 축소와 함께 조직의 통폐합도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조직개편이 행해져 預先所와 措備契가 倭單所로 통합되고, 水紬一所와 호상소는 補用所에 통합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須川英德, 2010 앞의 논문, 377면. 즉, 1900년 4월 21일 이후의 기록이 없는 이유는 호상소라는 부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 호상소의 장부를 초월하여 대방에서 관리한 각종 장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에서도 추정된 바 있다. 김미성, 2021a 앞의 논문, 67면.

25) ‘印’은 이두로서 ‘끝’이라고 읽는다.

26) 도장은 면주전이 남긴 다른 유형의 자료에 날인된 것과 동일하다.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印影을 통해 ‘綿紬塵’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영준, 2022 앞의 논문, 130면.

다음으로 살펴볼 자료는 『護喪所上下冊』이며, 표제는 『乙丑正月日護喪所上下冊』이라고 되어 있다. 『호상소차하책』은 표지 포함 총 54면 분량이며, 48면 분량이 기재되어 있다.²⁷⁾ 『호상소상용책』에 비한다면 대략 절반을 조금 넘을 정도로 소략하다. 작성 주체는 먼주전의 大房으로 동일하며, ‘上下’가 ‘지출한다’는 뜻이므로, 대방에서 호상소에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이다. 대방의 입장에서는 지출 장부이지만, 호상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입 장부라고 할 수 있다. 『호상소상용책』처럼 謄錄 성격의 謄簿에 해당하며, 그렇게 판단할 근거 역시 동일하고, 건별 등서 양식도 다르지 않다. 대부분 1열 분량으로 기재되었음도 마찬가지이다.

최초로 등서된 내역이 1866년(丙寅) 4월 20일자의 차하이고, 마지막 차하 내역은 1899년(己亥) 11월 13일자로서, 34년 6개월여 동안의 차하 내역이 개별 문서의 건별로 기록되어 있다.²⁸⁾ 기재된 기간에 결락이 없이 기록이 완비된 상태로 현존함은 『호상소상용책』과 마찬가지로이며, 해마다 기입된 내역이 많지 않은 점, 그래서 특정인이 장기에 걸쳐 등서를 전담하지는 않았고, 건별로 그때그때 등서하였음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등서된 차하의 내역은 명목, 금액, 끝맺는 套式의 순서로서, 『호상소상용책』과 마찬가지로이며, 건별 말미의 투식이 ‘上下印’(지급 완료를 의미함)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차하의 금액 표기 방식 및 단위도 『호상소상용책』과 동일하고, 작성 주체가 대방이며 날인한 도장 역시 일치한다.²⁹⁾

이상을 통해 『호상소차하책』의 형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호상소상용책』과 비교하게 되었는데, 양자가 쌍을 이루어 대칭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장부는 공히 대방이 호상소와 주고받은 내역을 동전 단위로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수입과 지출의 집계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치 분석에 이르기까지 시기 변화에 따른 추이를 살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게다가 다른 부서

27) 기재된 분량을 기준으로, 『조비계차하책』은 46면, 『백사계차하책』은 16면, 『수주이소차하책』은 16면이다.

28) 건별 차하가 아닌, 후술하는 정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1865년(乙丑) 10월 20일부터 1900년(庚子) 4월 20일까지 34년 6개월여 동안의 기록에 해당한다.

29) 1896년(丙申) 4월까지의 날인은 붉은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5월부터는 붉은색 인주로 날인되었다.

에서는 상용책과 차하책의 현존 기록에 일부 결락이 확인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양자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고찰하기가 여의치 않은 반면, 호상소의 경우에는 양호하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료는 『護喪所傳掌膾錄』이다. 『호상소전장등록』은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등록이며, 낱장의 문서인 『護喪所傳掌件記』를 낱자순으로 등서한 것이다.³⁰⁾ 『호상소상용책』과 『호상소차하책』이 각각 1권씩 현존하는 반면, 『호상소전장등록』은 2권이 현존한다. 각권의 표제는 『乙丑正月日護喪所傳掌膾錄』과 『壬辰十月日護喪所傳掌膾錄』이며, 전자는 196면, 후자는 66면의 분량이다. 전자에는 1864년(甲子) 4월 20일부터 1892년(壬辰) 4월 20일까지 18년여 년 동안의 전장발기가 등서되어 있고,³¹⁾ 후자에는 1892년(壬辰) 10월 20일부터 1900년(庚子) 4월 20일까지 9년여 동안의 전장발기가 등서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를 통틀어 시간적 공백 없이³²⁾ 1864년부터 1900년까지 연속적인 기록이 현존함을 알 수 있다. 『호상소상용책』이나 『호상소차하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호상소전장등록』이 2책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것일 뿐, 책수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호상소상용책』과 『호상소차하책』에는 각각의 등서 내역에 대해 ‘대방’이라고 적고 날인한 반면, 『호상소전장등록』에서는 大行首 1명, 領位 3명, 公員 2명 등의 성명이 적혀 있고, 대행수의 성명 아래에 도장이 찍혀 있다.³³⁾ 대행수, 영위, 공원이라는 세 직책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대방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고려한다면, 『호상소상용책』 및 『호상소차하책』의 작성 및 확인도 이들에 의

30) 역사 용어로서 전장의 사전적 의미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맡아보던 사무나 물건을 인계함”, 즉 인계인수이다(『한국고전용어사전』). ‘件記’는 이두로서 ‘발기’라고 읽는다.

31) 표제에는 ‘乙丑’(1865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작성된 내역의 처음에는 ‘甲子’(1864년)의 전장발기가 2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4월 20일자와 10월 20일자의 것이다.

32) 『호상소전장등록』에 수록된 『호상소전장발기』는 모두 각 연도별로 4월 20일과 10월 20일의 것만 보인다. 이는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주기적으로 전장발기가 작성되었음을, 다시 말해, 호상소 내의 인계인수가 6개월마다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33) 도장은 『호상소상용책』 및 『호상소차하책』과 동일하며, 1895년(乙未)까지의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나, 1896년(丙申)부터는 붉은색의 인주로 날인되었다.

해 이루어졌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후술하겠지만, 『호상소전장등록』 및 거기에 베껴 적어 둔 『호상소전장발기』에서 ‘傳掌’의 의미가 물품의 인계인수가 아닌 동전 및 채무관계, 즉 회계의 인계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진 잔액, 상용, 차하의 결산 내역 상세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론한다.

3. 『호상소상용책』과 잣돈 관리

면주전 대방의 잣돈 관리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호상소상용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호상소상용책』은 면주전의 대방에서 호상소로부터 어떤 명목의 자금을 수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35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빠짐없이 작성된 수취 내역을 통해 각종 명목의 수입 구성뿐 아니라 전체 추이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등서된 상용의 명목은 주로 부의 또는 금융에 관계된 것이다. 예컨대, “십좌 변○규의 아내 잣돈 29냥 2돈 5푼을 받아 씬. 끝”,³⁴⁾ “십좌 전○순의 본인 장례의 잣돈 29냥 2돈 5푼을 받아 씬. 끝”³⁵⁾ 등과 같이 면주전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의 장례에 관련된 수입 내역이 대종을 이루며, ‘齋錢’의 사례가 많지만 ‘別賻儀’ 내역도 더러 보인다. “別出次知之 立章에 의거하여 座上 掾弊하기 위한 生殖錢 4천 냥의 6개월분 이자 360냥 중에서 받아쓴 몫 302냥 5돈의 6개월분 이자 27냥 2돈 3푼을 제외한 나머지 332냥 7돈 7푼을 分兒하기 위해 받아 씬. 끝”³⁶⁾과 같은 ‘分兒’의 사례도 보이는데, 다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호상소상용책』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주기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정산은 朱筆로 작성되었는데, 일반적인 상용 등서와 마찬가지로의 형식으로 날짜, 내역, ‘대방’의 순서로 기재되었다. 예컨대, 최초로 기재된 정산 내

34) 『호상소상용책』 1864년 11월 5일자. “邊十座圭妻齋貳拾玖兩貳錢伍分上用印”

35) 『호상소상용책』 1865년 3월 19일자. “全十座珣已喪齋貳拾玖兩貳錢伍分上用印”

36) 『호상소상용책』 1899년 4월 20일자. “別出次知立章據座上掾弊次生殖錢肆仟兩六朔邊參佰陸拾兩內上用條參佰貳兩伍錢六朔邊貳拾柒兩貳錢參分除實參佰參拾貳兩柒錢柒分分兒次上用印”

역은 “已上種種上用本邊合陸拾柒兩參錢壹卜會減印”(1865년 4월 20일)이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한데 묶어서 원리합계를 확인하고 會減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⁷⁾ 해마다 4월과 10월의 두 차례에 걸쳐 당월 20일에 정산되었고, 정산 내역 뒤의 ‘대방’ 아래에는 일반적인 상용 등서와 달리 도장을 찍지 않았다.

개개의 건별 내역의 금액 기록 오른쪽에 주필로 점이나 선 또는 ‘P’자 형의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사례가 보이는데, 이는 정산 과정에서 모든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붉은 색으로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둔 내역은 별도의 장책으로 移記되었음을, ‘P’자 형의 기호가 표시된 내역은 채무가 청산 또는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P’자 형의 기호로 처리된 사례를 예시하면, “補弊所에 이송한 돈 100냥을 나중에 되돌려 받고자 받아 씬. 끝”과 같다.³⁸⁾

정산 과정에서 애초에 기재해 두었던 내역에 대한 覈周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예컨대, 『호상소상용책』의 맨 뒷부분에 기재된 1900년 4월 21일자 내역 4건에 대해 모두 ‘ㄱ’자 형태로 주필로 표시해 둠으로써 해당 내용의 취소 또는 소멸을 확인하고 있다. 4건 중의 첫째 사례에 대한 내역만 예시하면, “이번 1월에 公事次知의 立章에 의거하여 호상소의 所負人인 십좌 홍○태 몫을 하나도 납부하지 않은 원리합계 198냥 7돈 7푼과 仍留한 원금 243냥 9돈 6푼의 합계 442냥 7돈 2푼을 補用所에 移劃하는 것 중에 都聚冊 중에 옮겨 보내고자 받아 씬. 끝”과 같다.³⁹⁾

『호상소상용책』에 등서된 전체 문서의 수량적 파악을 위해, “已上種種上用本邊合”에 대한 회감 기록을 제외하고, 전체 상용의 기록을 집계하면 <표 1>과 같다. 1865년부터 1900년까지 437건이 수록되어, 연 평균 약 12건이 등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간 추이에 따라 특별한 등락의 경향을 찾기는 어렵다. 이는 전체 시기에 걸쳐 면주전 대방의 호상소 관리, 나아가 조비계, 백사계, 수주이소 등을

37) 회감의 사전적 의미는 “받을 것과 줄 것을 마주 셈하여 많은 수효에서 적은 수효를 相殺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한국고전용어사전』).

38) 『호상소상용책』 1898년 4월 16일자. “補弊所移送文壹百兩日後還捧上次上用印”

39) 『호상소상용책』 1900년 4월 21일자. “今正月日公事次知立章據本所所負人洪十座泰分一不納本邊合壹百玖拾捌兩柒錢柒卜仍留本貳百肆拾參兩玖錢陸卜合肆百肆拾貳兩柒錢貳卜補用移劃中都聚冊中移送次上用印”

포괄하는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2월, 4월, 7월, 8월, 10월 등에서 40건 이상의 등서 내역이 확인되므로, 뚜렷한 계절성이 드러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시기별 등서의 빈도를 <표 1>을 통해 확인한 이유는 잣돈의 상용 시기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잣돈의 상용에 있어서 계절적 변동도 없었고, 장기 추세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표 1> 『호상소상용책』에 등서된 문서의 건수 (단위: 건)

연도	월												계			
	1	2	윤2	3	윤3	4	5	6	윤6	7	8	9		10	11	12
1865				1		2	3			2	4		3	2	1	18
1866	2	1		1		1		1		2			1	2	1	12
1867	1	2				1	2			2	1		2	2	3	16
1868						1	1	1				2				5
1869	1	2		1		1	1	1		4	2	1	2		2	18
1870	1	3		1		4					1		2	1		13
1871	3	4					1				2	1		2		13
1872				1			3			1	2	1	4		1	13
1873				1		1		2		1			1			6
1874	1	2		2				1			1	2			1	10
1875		4		1		1	3			2	2	1	1			15
1876	1			2			2	1		1		1		1	2	11
1877	2	2		1			2			3	1	1		2		14
1878	1	3		2		1	1	1		1		2		2		14
1879	1					1	1			2	9		1			15
1880		1		1			1				2	2		1		8
1881	1	1		1			1			2			3			9
1882	1					2	2	1		2	2		1	2	1	14
1883	1			1		1		1			4	2	1	1		12
1884						2	1	2		1					3	9
1885	1	1				1		2			1	2	1		2	11
1886		5		1		3	1	2		4	2	2				20
1887		1				2	1				2		3		2	11
1888	1					1	2	3			1		1		1	10
1889						2	2	1					2	2	3	12
1890		2	1	1		3					1	1	1	1		11
1891						1	2	1		1		1	1		2	9
1892	2			3		1		2	2							10

1893	1	1		2			1				1				6	
1894		1				1				1		1	2		1	7
1895		2		1		1		4		3		2	1			14
1896	1			1		1	1			1	1		1		1	8
1897				1		1				4	1		3		3	13
1898	1			3	1	2	2	1		1	2	1	2	1	2	19
1899	3	4		1		3		1		2	2	1	4	2	1	24
1900	2					5										7
계	29	42	1	31	1	47	37	29	2	43	47	27	44	24	33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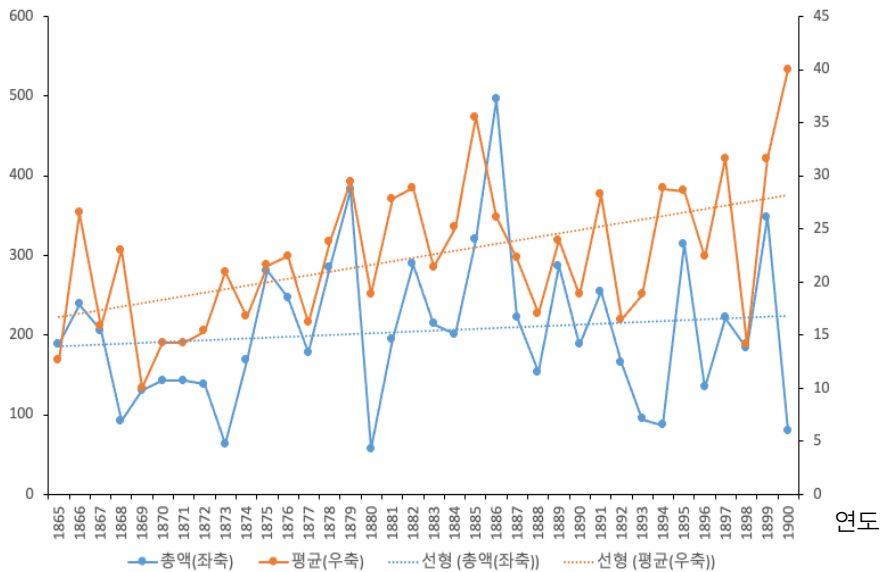
주: 1864년 11월 5일자 1건은 편의상 1865년에 포함하였다.

그렇다면 면주전 대방에서 호상소로부터 상용한 금액 중에서 잣돈이 차지하는 몫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호상소상용책』에 등서된 기록을 명목별로 구분하여 빈도와 금액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잣돈 내역이 340건으로 약 78%에 달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致慰錢으로서 37건이 확인되어 약 8.5%를, 그 다음은 別賻儀가 31건으로 약 7%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分兒, 移送, 還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면주전이 호상소를 통해 수취한 금액 중에서 잣돈과 별부의 등 장례에 대한 부조가 약 85%로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인원 371명이 잣돈이나 별부의 등의 명목으로 부조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표 2〉 『호상소상용책』 등서 내역의 명목별 빈도와 금액 (단위: 권, 냥)

연도	책돈			별부의			치위			분아			이송			기타			회감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1865	15	188.75	12.58	2	5	2.5	1	10	10										2	170.4	85.20	
1866	9	238.25	26.47	2	5	2.5	1	10	10										2	209.18	104.59	
1867	13	205.25	15.79	1	2.5	2.5	2	20	10										2	232.66	116.33	
1868	4	92	23.00				1	10	10										2	207.57	103.79	
1869	13	130.25	10.02	3	7.5	2.5	2	20	10										2	146.65	73.33	
1870	10	142.5	14.25	3	7.5	2.5													2	136.83	68.42	
1871	10	142.5	14.25	2	5	2.5	1	10	10										2	164.25	82.13	
1872	9	138.25	15.36	1	2.5	2.5	3	30	10										2	169.5	84.75	
1873	3	62.75	20.92	1	2.5	2.5	2	20	10										2	135.68	67.84	
1874	10	167.5	16.75																2	163.34	81.67	
1875	13	280.25	21.56	2	5	2.5													2	327.51	163.76	
1876	11	246.75	22.43																2	191.85	95.93	
1877	11	177.5	16.14	1	2.5	2.5	2	20	10										2	251.12	125.56	
1878	12	285.1	23.76	1	5	5								1	30	30			2	333.37	166.69	
1879	13	382.55	29.43	1	5	5	1	5	5										2	445.69	222.85	
1880	3	56.55	18.85	1	5	5	3	15	5									1	100	100	86.03	43.02
1881	7	194.45	27.78	1	5	5	1	5	5										2	305.5	152.75	
1882	10	288.5	28.85	1	5	5	2	10	5										2	367.95	183.98	
1883	10	213.5	21.35	1	5	5	1	5	5										2	279.97	139.99	

〈표 2〉를 통해 잿돈 지급의 빈도에서는 큰 경향성을 찾을 수 없다. 잿돈의 규모는 연도별로 많게는 490여 냥까지, 적게는 60냥 미만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1860년대부터 1870년대 중반까지는 잿돈 지급액이 많지 않았는데,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까지는 규모가 증대되는 양상이 보인다. 그에 비해 1890년대에는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다. 전체 추세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갑오개혁에 따른 단체 성격의 변화와도 그다지 큰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잿돈의 평균액은 장기적으로 증대되는 양상이 확연히 관찰된다(〈그림 1〉). 기존 연구에서 복원한 잿돈의 지급 규정에서 잿돈의 장기적 조정이 일방적 증액이 아니었음을 고려한다면,⁴⁰⁾ 잿돈 평균액의 증대에 관한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수량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1〉 『호상소상용책』에 기재된 연도별 잿돈 규모와 평균액 (단위: 냥)

40) 김미성, 2021b 앞의 논문, 114면. 예컨대, 己亥의 경우, 증액 후에 감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잿돈의 조정에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세부적 분석을 위해, 『호상소상용책』에 기재된 잣돈의 다양한 명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己喪齋, 妻喪齋, 父喪齋, 母喪齋 등의 이른바 四望을 위주로 하면서도, 外祖母齋, 三寸叔父齋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八寸에 이르기까지의 친척에 대한 장례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밝힌 代望에 따른 것이다. 대망이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존하지 않은 자들은 入參單子 제출시에 아버지를 대신할 사람, 어머니를 대신할 사람을 望葬單子에 적어서 제출하는 방식이다.⁴¹⁾ <표 2>에서 확인된 340건의 잣돈 내역 중에서 1건을 제외한 339건에 대해⁴²⁾ 구체적인 대망 실태를 파악하여 정리한 것이 <표 3>과 <표 4>이다.

<표 3>은 『호상소상용책』에 기재된 잣돈 지급의 빈도를, <표 4>는 해당 내역에 대한 연도별 평균액을 계산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평균액은 1건당 실제 지급액과 동일하며,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발췌하여 요약하기도 했다.⁴³⁾ 요약된 정보를 통해 지급액의 수준은 알 수 있지만, 실제의 지급 빈도나 구체적인 사망자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표 3>과 <표 4>는 면주전 대방이 관계한 면주전 구성원 또는 가족의 사망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41) 조영준, 2020 앞의 논문, 264-267면.

42) 제외된 1건은 削名으로 인한 것이다. 1874년 8월 8일에 劉十座元의 妻父齋로 인해 4냥 2돈 5푼을 상용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익일인 8월 9일에 이를 주필의 ‘ㄱ’ 표시로 효주하고 “捨近取遠分除良受齋後現露故削名勿施”라고 하였다. 이 내역이 이후 10월 20일의 주필 회감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43) 김미성, 2021b 앞의 논문, 114면.

우선 <표 3>을 통해, 전체 사망 339건 중에서 126건에 달하는 약 37%가 己喪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처상 46건(13.6%), 모상 36건(10.6%), 처부상 25건(7.4%), 처모상 21건(6.2%), 부상 15건(4.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기, 처, 부, 모, 처부, 처모 이외의 다른 사례는 상시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통계를 가지고 실제로 부, 모, 처부, 처모의 사망이 발생한 빈도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망으로 망장단자에 기재한 자가 사망한 사례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제의 사망 빈도가 아니라, 대망된 자의 사망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상의 빈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처부상의 빈도가 높은 것은, 아버지가 이미 죽은 자들이 처부를 아버지 대신에 망장단자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처부 사망에 대한 잣돈 지급이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3>과 <표 4>를 결합하여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잣돈의 평균액이 증대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1878년부터 잣돈의 구조적 증액이 이루어졌고, 1888년 이후의 감액은 그에 비해 미소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잣돈의 규모가 월등히 높은 기상과 처상의 사례가 전체 잣돈 지급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지 않거나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가 결합하여, <그림 1>에서 잣돈 평균액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표 2>로 돌아가 보자. 잣돈에 이어 높은 빈도를 보이며 등서된 내역은 致慰錢이다. 치위전은 모두 新大房과 관계된 것인데, 잣돈이 증액되었다가 감액되는 구조적 변화를 겪은 것과 반대로, 감액되었다가 증액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보인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별부의는 故同官의 부인에 대한 부조금인데, 잣돈과 유사하게 증액되었다가 감액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잣돈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喪葬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그밖에 확인되는 중요 사항은 分兒와 移送이다. 먼저 이송을 살펴보면, 1878년 2월에 “聖廟創建時補幣所移送錢”이 30냥, 1882년 5월에 “補用所補縮次移送文”이 100냥이었고, 그밖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이송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송의 마

지막 사례는 1900년 4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1900년 4월 20일에 최종적인 회감이 있는 뒤에 전체 잔액을 補用所로 이송한 것으로서, 5,552냥 7돈 6푼을 비롯하여 총 5건으로 8,187냥 7돈 5푼이다. 분야는 1894년 이전에는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1894년부터 1899년까지 매년 2-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앞서 소개한 1899년 4월 20일자 사례처럼, 대부분 生殖錢의 朔邊에 대한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로 이루어진 분야와 1900년에 실시된 이송을 통해 호상소가 폐지되기 직전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 호상소를 비롯한 면주전 대방의 잣돈, 별부의, 치위전 운영이 형해화되는 과정으로서 1894년과 1900년이라는 두 차례의 轉機를 『호상소상용책』으로부터 설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4. 『호상소차하책』과 예전 관리

면주전 대방의 예전 관리는 『호상소차하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면주전의 호상소 운영을 입체적·다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호상소상용책』과의 비교를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호상소차하책』은 면주전의 대방에서 호상소에 어떤 명목의 자금을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34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빠짐없이 작성된 지급 내역을 통해 각종 명목의 지출 구성뿐 아니라 전체 추이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등서된 차하의 명목은 주로 禮錢이다. 예컨대, “홍성태의 중상례전 6냥 2돈을 지급함. 끝”,⁴⁴⁾ “유성환의 신참례전 5냥을 지급함. 끝”,⁴⁵⁾ “박명우의 관신래입참례전 12냥 5돈을 지급함. 끝”⁴⁶⁾ 등과 같이 면주전 구성원의 重床禮, 新參禮, 判新來入參禮 등의 명목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호상소에 補縮하기 위해 預先所에서 옮겨 온 돈 100냥을 지급함. 끝”⁴⁷⁾과 같이 면주전 내의 부서 간에 오간 자금의 내역이나, “앞 기간의 십좌 유○상의

44) 『호상소차하책』 1866년 4월 20일자. “洪成泰重床禮陸兩貳錢伍分上下印”

45) 『호상소차하책』 1867년 1월 3일자. “劉成桓新參禮伍兩上下印”

46) 『호상소차하책』 1875년 5월 12일자. “朴命祐判新來入參禮拾貳兩伍錢上下印”

47) 『호상소차하책』 1877년 4월 20일자. “本所補縮次預先所移來錢壹百兩上下印”

장모 장례에 잣돈 6냥 3돈 5푼을 잘못 지급하였으므로 별출차지의 입장에 의거하여 돌려받아 지급함. 끝”⁴⁸⁾과 같이 賻儀金 지출이 잘못되어 환급받아 지출한 예외적 사례도 보인다.

주기적으로 4월과 10월에 정산이 이루어졌음은 『호상소상용책』과 마찬가지로이지만, 『호상소차하책』에서는 會減이 아닌 會錄이라고 표현하였으며,⁴⁹⁾ “以上上下陸兩貳錢伍卜會錄印”(1865년 4월 20일)과 같은 형식이다. 해당 기간에 지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上下無” 등으로 표현하곤 했다. 『호상소차하책』에도 ‘P’자형의 기호로 처리된 사례가 있으며, “호상소에 補縮하기 위해 措備契에서 이래한 돈 100냥을 지급함. 끝”⁵⁰⁾이 그 일례이다.

『호상소차하책』에 등서된 전체 문서의 수량적 파악을 위해, “以上上下”에 대한 회록 기재를 제외하고, 전체 차하의 내역을 집계하면 <표 5>와 같다. 1865년부터 1900년까지 196건이 수록되어, 연 평균 약 5.4건이 등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간 추이에 따라 확연한 등락의 경향을 찾기는 어렵다. 이는 『호상소상용책』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시기에 걸쳐 면주전 대방의 호상소 관리, 나아가 조비계, 백사계, 수주이소 등을 포괄하는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므로, 『호상소차하책』과 『호상소상용책』이 상호 조응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면, 기재가 시작되는 1865년과 기재가 종결되는 1900년에 차하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2월, 5월, 10월 등에서 20건 이상의 등서 내역이 확인되지만, 역시 뚜렷한 계절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시기별 등서의 빈도를 <표 5>를 통해 확인한 이유는 예전의 차하 시기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전의 차하에 있어서 계절적 변동도 없었고, 장기 추세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8) 『호상소차하책』 1886년 4월 29일자. “前等劉十座相妻母喪齋錢陸兩參錢伍分誤上下故別出次知立章據還捧上上下印”

49) 역사 용어로서의 ‘會錄’은 주로 환곡과 관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字義는 “계산하여(또는 회계하여) 기록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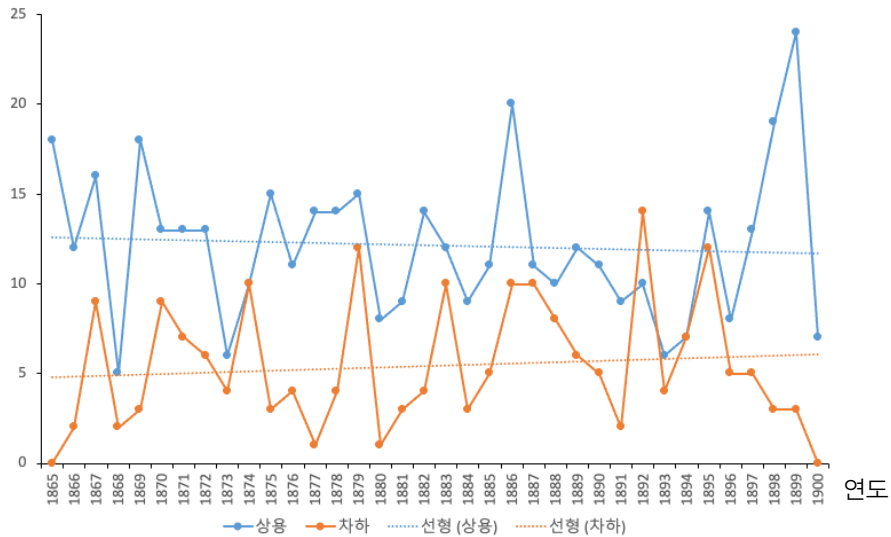
50) 『호상소차하책』 1878년 10월 22일자. “本所補縮次措備契移來文壹佰兩上下印”

〈표 5〉 『호상소차하책』에 등서된 문서의 건수 (단위: 건)

연도	월												계			
	1	2	3	윤3	4	윤4	5	윤5	6	7	8	9		10	11	12
1865																0
1866					1					1						2
1867		3	2				1			1		2				9
1868		1										1				2
1869		1					1							1		3
1870										1	2	5			1	9
1871	4								1			1		1		7
1872	2						1								3	6
1873		1								1				2		4
1874	3				1					1		1	3	1		10
1875		2					1									3
1876								2		1			1			4
1877					1											1
1878		1			1								2			4
1879		4					1			1	3		1	2		12
1880															1	1
1881	1		1											1		3
1882	1		1		1					1						4
1883					1					3	1	1	1	2	1	10
1884		1			1				1							3
1885	3				1								1			5
1886		2			3		1		2	1		1				10
1887			1			1				3	2		1	2		10
1888		2					1		2		1	1	1			8
1889					1		1		1				2		1	6
1890					1					1		1	1		1	5
1891													1		1	2
1892		1					7					2	4			14
1893					1		1					1		1		4
1894		1			1		1							4		7
1895		1	3		1		2			2		2	1			12
1896	1	1	1				1								1	5
1897	2						1			1					1	5
1898			1	1	1											3
1899			1				1							1		3
1900																0
계	17	22	11	1	17	1	22	2	7	19	9	19	20	18	11	196

〈표 1〉과 〈표 5〉를 비교해보면, 『호상소상용책』에 비해 『호상소차하책』의 기

재 빈도가 절반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체 추이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 그려본 것이 <그림 2>이다. 『호상소상용책』과 『호상소차하책』 모두 장기적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양자 간의 격차가 약 2배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의 이해를 위해서는 『호상소상용책』이 주로 상례에 따른 잣돈과 관계되고, 『호상소차하책』이 주로 가입이나 승진 등 예전과 관계됨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호상소상용책』은 면주전 구성원 본인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사례까지 포함하는 반면, 『호상소차하책』은 주로 본인과 관계된 경우에 한정된 사례가 기재된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호상소상용책』과 『호상소차하책』의 등서 빈도 (단위: 건)

그렇다면 면주전 대방에서 호상소에 차하한 금액 중에서 예전이 차지하는 몫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호상소차하책』에 등서된 기록을 명목별로 구분하여 빈도와 금액을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예전 내역이 171건으로 약 87%에 달하여 대종을 이루며, 그 중에서도 新入參禮가 122건(62.2%),⁵¹⁾ 重

51) 新參禮, 入參禮, 新入參禮 등을 모두 포함한다.

床禮(14.8%)가 29건, 判新來入參禮가 20건(10.2%)으로 확인된다. 나머지는 移來, 生殖, 分兒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면주전 대방이 호상소에 지급한 금액 중에서 예전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을 통해 신입참례나 중상례의 예전 지급 빈도에서는 큰 경향성을 찾을 수 없는 반면, 판신래입참례의 경우는 1887년부터 1895년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 시기에 면주전에 위기가 도래하였음을 밝힌 기존 연구를 고려한다면,⁵²⁾ 위기 극복을 위한 인적 충원을 위한 시도가 『호상소차하책』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잣돈에 관한 규정이 1878년에 변경된 것처럼, 예전 규정 역시 같은 시기에 바뀌었다는 점 역시 〈표 6〉에서 확인된다. 신참례(입참례)는 5냥에서 7냥 5돈으로, 중상례는 6냥 2돈 5푼에서 9냥 3돈 7푼 또는 9냥 3돈 8푼으로, 판신래입참례는 12냥 5돈에서 18냥 7돈 5푼으로 변경되었다. 잣돈과 달리, 예전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이나에 따른 차등이 없었다. 예컨대, 입참례의 경우, 본인의 입참이든 장자나 손자의 입참이든 모두 동일한 예전이 기재되어 있고,⁵³⁾ 중상례 역시 본인에 관한 것이든 妻喪에 관한 것이든 예전 금액은 모두 동일하다.

52) 오언 밀러, 앞의 논문; 김미성, 2019 「19세기 말 면주전 집방(接房)의 감소와 도중(都中)의 대응」 『역사와 현실』 114, 103-141면.

53) 특이한 사례인, 1896년 12월 10일의 故同官吳三座永에 대한 “死後承蔭四子”에 대한 入參禮의 경우에도 동일한 예전이 확인된다.

〈표 6〉 『호상소치하책』 등서 내역의 명목별 빈도와 금액 (단위: 건, 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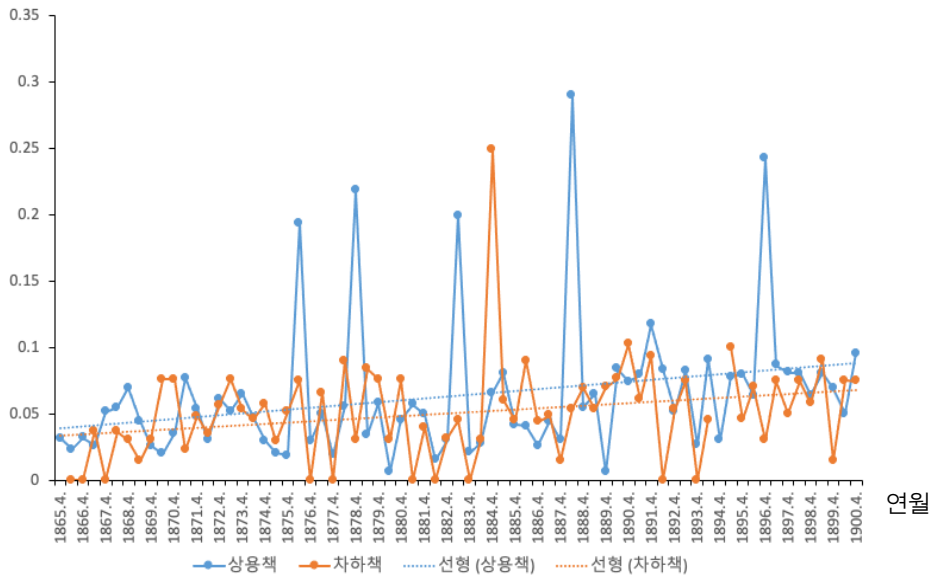
연도	신입참례			중상례			판신태입참례			이례			생식			분야			기타			회록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빈도	총액	평균
1865																						1	0	0
1866				2	12.5	6.25																2	12.73	6.37
1867	9	45	5																			2	45.73	22.87
1868	1	5	5	1	6.25	6.25																2	11.49	5.75
1869	2	10	5	1	6.25	6.25																2	11.82	5.91
1870	9	45	5																			2	46.29	23.15
1871	5	25	5	2	12.5	6.25																2	37.84	18.92
1872	5	25	5	1	6.25	6.25																2	22.55	11.28
1873	4	20	5																			2	27.61	13.81
1874	9	45	5	1	6.25	6.25																2	53.45	26.73
1875	1	5	5	1	6.25	6.25	1	12.5	12.5													3	35.78	11.93
1876	3	15	5	1	6.25	6.25																1	17.32	17.32
1877														1	100	100						2	114	57.00
1878	2	15	7.5										2	200	100							2	124.23	62.12
1879	9	67.5	7.5	2	18.74	9.37							1	500	500							2	697.63	348.82
1880	1	7.5	7.5																			2	16.13	8.07
1881	3	22.5	7.5																			2	23.4	11.70
1882	2	15	7.5	1	9.37	9.37							1	100	100							2	137.38	68.69
1883	9	67.5	7.5	1	9.38	9.38																2	55.73	27.87
1884	3	25.75	8.58																			2	58.83	29.42

5. 회감 및 회록과 『호상소전장등록』

상용에 대한 회감과 차하에 대한 회록이 모두 정산에 해당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하지만 『호상소상용책』과 『호상소차하책』에 기재된 내역을 다시 확인하여 檢算해 보고자 하는 경우, 수치를 정확히 도출하여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호상소상용책』에서 1865년 4월 20일에 실시한 회감은 최초 4건의 상용에 대한 것인데, 邊十座圭의 妻齋에 대한 29냥 2돈 5푼, 全十座珣의 己喪齋에 대한 29냥 2돈 5푼, 文下公員의 大夫人齋에 대한 4냥 2돈 5푼, 故同官 文五座基의 夫人別聘儀에 대한 2냥 5돈 등을 합산한 결과가 65냥 2돈 5푼인 것과 달리, 회감액은 67냥 3돈 1푼으로 기재되어 있어, 2냥 6푼의 차이가 확인된다. 이렇게 회감액이 실제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회감의 과정이 “以上種種上用本邊合”으로서, 원금(本)뿐만 아니라 이자(邊)까지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⁴⁾ 이는 회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개월마다 시행된 회감과 회록에서, 실제 합계와 달리 개개의 건에 대한 이자가 반영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그려본 것이 <그림 3>이다. 『호상소상용책』과 『호상소차하책』에 기재된 내역을 합산한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장부상의 회감액 또는 회록액이 도출되는지를 계산해본 것이다. 6개월마다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여기서의 이자율은 일반적인 연리가 아니라 1개월부터 6개월 사이의 기간에 대한 것이다. 『호상소차하책』에서 이자율이 0으로 계산된 사례가 여럿 보이는데, 이는 4월 또는 10월의 정산 당월에 기재된 건으로서 기간이 0이므로 이자율 역시 0으로 계산된 사례, “以上上下無”로서 차하 내역이 없는 사례 등에 해당한다.

54) 회감의 과정에서 효주까지 반영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1874년 8월 8일의 삭명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림 3〉 『호상소상용책』·『호상소차하책』의 회감 및 회록에 대해 재구성한 이자율

주: 『호상소차하책』의 경우, 1894년 4월의 이상값은 정산 오류라고 판단하여 제외함.

〈그림 3〉을 보면, 이자율의 구간이 0%에서 10% 사이의 밴드를 구성하고, 대략 5%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자율이 이렇게 계산되는 이유는 月利가 1.5%였기 때문이며, 후술하는 『호상소전장등록』의 기재 내역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는 정보이다.⁵⁵⁾ 『호상소상용책』이나 『호상소상하책』에는 회감이나 회록의 구체적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호상소전장등록』에는 상세히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림 3〉에서 20% 또는 30% 수준의 이상값이 간간히 보이는데, 이는 실제 이자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정산 방식으로 인한 예외적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미하나마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자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호상소상용책』 및 『호상소차하책』의 정산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방의 호상소에 대한 회감 및 회록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는 『호상소전장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

55) 월리 1.5%의 적용 사례는 면주전의 각종 『手本』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호상소전장등록』은 시기적으로 연속된 내용을 담은 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책에는 반기마다 작성된 『호상소전장발기』가 등서되어 있어, 면주전 대방의 호상소에 대한 자금 출입의 정산 결과를 6개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산 내역 및 장기 추이도 살펴 볼 수 있다.

『호상소전장등록』에 수록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을축정월일호상소전장등록』의 가장 앞에서 두 번째에 등서되어 있는 『甲子十月二十日護喪所傳掌件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사례가 아닌 두 번째 것을 예시하는 이유는, 前期와 次期 사이의 傳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當期の 내역 외에 前期의 내역과의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갑자시월이십일호상소전장발기』는 맨 앞에서 前期로부터 이월된 동전(前等傳掌錢文)이 1,117냥 4푼임을 밝힘으로써 시작한다. 이 금액은 바로 앞 期の 『甲子四月二十日護喪所傳掌件記』의 맨 뒤에서 都以上sum으로 계산해 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1,117냥 4푼 중에서 金錫仁이 帖賣한 50냥, 崔章煥이 이자 없이 빌려 간(無邊貸去) 44냥 5돈 7푼, 張完吉이 이자 없이 빌려 간 80냥 5돈 8푼의 私貸를 합한 175냥 1돈 5푼을 제외한 실제의 이월 금액은 941냥 8돈 9푼이고, 6개월 동안의 이자(六朔邊)가 56냥 5돈 1푼이며, 원리합계(本邊合)는 998냥 4돈이다. 여기까지가 4월 20일에 전장된 금액 및 그 정산 내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열 구분 없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上項의 사대를 還入한 175냥 1돈 5푼까지 모두 합한(都以上合) 1,173냥 5돈 5푼과, 5월의 崔錫昌 新參禮錢 5냥과 5개월 동안의 이자 2돈 5푼까지 원리합계 5냥 2돈 5푼, 8월의 金漢奎 신참례전 5냥과 2개월 동안의 이자 1돈까지 원리합계 5냥 1돈, 종종 지급한 원리합계(種種上下本邊合) 10냥 3돈 5푼을 모두 합하면, 1,183냥 9돈이다. 여기까지가 4월 20일 이후 10월 20일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지급한 금액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산하여 전기 이월액에 더해 둔 부분이다.

역시 열 구분 없이 이어지는 내용을 또 살펴보면, 그 중에서 6월에 劉景祐의 장인 齋錢 4냥 2돈 5푼, 새 大房의 致慰錢 10냥, 십좌 丁○英의 부인 잣돈 29냥 2돈 5푼, 盧弘植의 外祖 잣돈 4냥 2돈 5푼을 합한 47냥 7돈 5푼과 4개월 동안의

이자 1냥 9돈 1푼의 원리합계 49냥 6돈 6푼, 8월의 3좌 白○滯의 부인 잣돈 29냥 2돈 5푼과 2개월 동안의 이자 5돈 9푼의 원리합계 29냥 8돈 4푼, 10월의 林光壽의 숙모 잣돈 4냥 2돈 5푼, 종종 받아쓴 원리합계(種種上用本邊合) 83냥 7돈 5푼을 제외한 실제 남은 돈(餘文)은 1,100냥 1돈 5푼이다. 여기까지가 4월 20일 이후 10월 20일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받아 쓴 금액을, 위에서 계산한 이월액 및 지급액과 상계하여 정산한 내역에 해당한다.

『갑자시월이십일호상소전장발기』에 기재된 이러한 정보는 『호상소차하책』에 기재된 차하 내역 및 회록의 결과, 『호상소상용책』에 기재된 상용 내역 및 회감의 결과와 일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현존하는 『호상소상용책』은 1864년 11월 5일자부터, 『호상소차하책』은 1866년 4월 20일자부터 등서되어 있는데, 만약 『호상소전장등록』의 내용을 활용하게 된다면, 『호상소상용책』과 『호상소차하책』의 정보를 모두 1863년 11월까지 소급하여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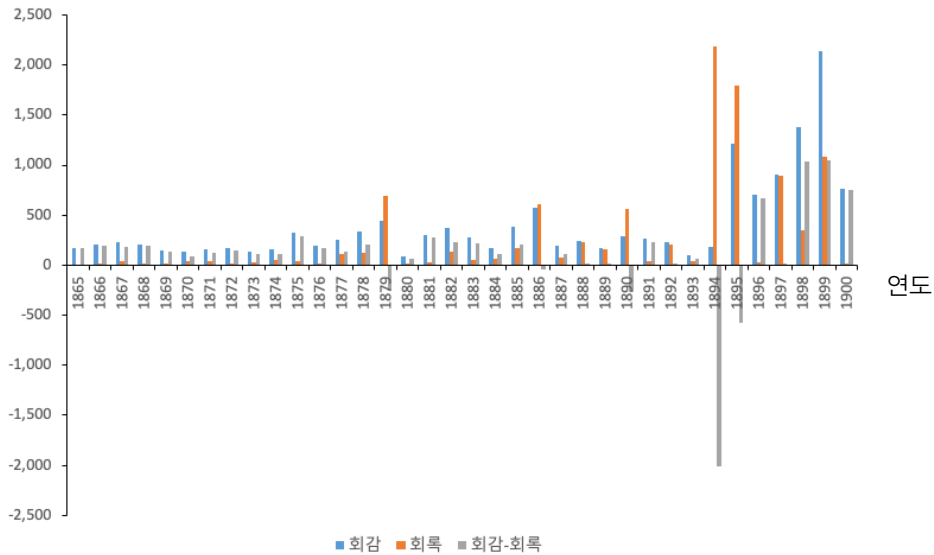
『갑자시월이십일호상소전장발기』의 위와 같은 기재 내역을 요약해 보면, 이월액이 1,117냥 4푼이고, 그로부터 사대액을 제외하여 이자까지 정산한 금액이 998냥 4돈이며, 거기에 다시 사대액을 환입하여 지급액에 이자까지 적용하면 1,183냥 9돈, 다시 거기에 받아 쓴 금액을 이자까지 적용하면 1,100냥 1돈 5푼이 되는 것이다.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열 구분 없이 이어서 작성되어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반면, 이어지는 내역은 항목별로 알기 쉽게 구분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후반부’라고 지칭한,⁵⁶⁾ 이하의 내역은 상용 및 차하와는 무관하다.

우선 族仍留人으로서 行首 劉○潤, 劉泰溶, 행수 吳○國, 吳尙業의 네 명이 나열되어 있다. 개개인의 기재 내역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劉○潤의 사례만 예시하면, 원금(本)이 42냥 6돈 6푼이고, 그 19분의 1을 낸(十九分一出) 2냥 2돈 4푼을 제외한 잔액(實)이 40냥 4돈 2푼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명 모두에 대해 각각 잔액을 계산해 두고, 實仍留습이 93냥임을 다시 계산해 놓았다. 19분의 1을 낸 사람이 두 명, 9분의 1을 낸 사람이 두 명이다. 이어서 時撻授人

56) 김미성, 2021a 앞의 논문, 59면.

으로서 都領位 朴○○을 포함한 여덟 명을 나열해 놓았는데, 그 중의 일곱 명은 원금(本) 100냥, 나머지 한 명은 원금 102냥임을 기재해 두었다. 그래서 時撥授 습이 802냥이 됨을 다시 계산해 놓았다. 다음은 稍實人이며, 五座 金○懨을 비롯한 여섯 명에 대하여 각각 원금이 20냥임을 기재해 두었다. 그래서 稍實人 습이 120냥이 됨을 다시 계산해 놓았다. 마지막은 私貸秩인데, 앞서 등장한 김석인, 최장환, 장완길의 사대 내역을 그대로 다시 적은 다음, 私貸 습이 175냥 1돈 5푼임을 계산해 두었다. 사대합의 다음 열에, 앞서 정산한 최종 금액(都以上 습) 1,100냥 1돈 5푼을 다시 한 번 적어 놓고, 그 아래에 ‘끝(印)’이라고 표시해 두었다. 여기까지가 『갑자시월이십일호상소전장발기』의 전체 내용이다. 1,100냥 1돈 5푼이라는 이월 금액은 6개월 뒤에 작성된 『乙丑四月二十日護喪所傳掌件記』에서 前期로부터 이월된 동전(前等傳掌錢文)의 금액으로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族仍留人’ 이후의 내역은 상용이나 차하와 무관하며, 이는 잣돈이나 예전과 무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族仍留人’ 이전에 기재된 『갑자시월이십일호상소전장발기』의 내역은 『호상소상용책』과 『호상소차하책』의 회감 및 회록 절차를 소상히 적어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호상소전장등록』이 없다면 『호상소상용책』이나 『호상소차하책』에서의 회감 및 회록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호상소상용책』 및 『호상소차하책』의 구체적인 정산은 『호상소전장등록』까지 참고하여 검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검산이 <그림 3>에서 살펴보았듯이 1-6개월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이자 계산임을 감안하여, 『호상소전장등록』과의 대조 없이 『호상소상용책』과 『호상소차하책』만으로 회감과 회록의 장기 변동을 추적해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 『호상소상용책』의 회감과 『호상소차하책』의 회록, 그리고 양자의 차액 (단위: 냥)

〈그림 4〉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연도에서 회감액이 회록액보다 크고, 1879년, 1886년, 1890년, 1894-1895년 등 극히 일부의 연도에서만 회록액이 회감액보다 크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1894년 4월 20일의 회록액은 오류임이 분명하므로,⁵⁷⁾ 이를 제외하면, 4개 연도에서만 회록액이 회감액보다 크다. 또한 그 경우에도 회록액과 회감액의 차이는 크지 않다. 회감액이 회록액보다 큰 경우에는 대개 격차가 크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4개의 특정 연도에 대해 회록액이 회감액보다 컸던 이유는 무엇일까? 〈표 6〉에 요약되어 있듯이, 1879년에는 조비계와 왜단소에서 이래된 금액이 500냥, 1886년에는 다섯 차례의 이래 금액이 450냥, 1890년에도 보용소에서 이래된 금액이 500냥, 1895년에는 두 차례의 생식 금액이 1,200냥이었다. 이러한 고액의 이래가 없었다면, 회록액이 회감액보다 클 수 없었던 것이 면주전 대방의 호상소 운영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질이다. 이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57) 전술하였듯이 『호상소상하책』의 회록에 대한 검산은 『호상소전장등록』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잣돈의 지급을 중심으로 하는 상용이 예전의 지급을 중심으로 하는 차하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더 비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회감 및 회록의 전체 추이에서 큰 변동이 없다가 1894년 이후로 급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轉機에 해당하며,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확연히 구분 짓는 것이다(structural break).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면주전 대방의 잣돈과 예전 운영은 1900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6. 맺음말

면주전 운영의 중심에는 대방이 있었고, 대방은 호상소, 조비계, 백사계, 수주이소 등을 통해 구성원에 대해 자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자금의 대종을 이룬 것이 잣돈과 예전이였다. 이 연구에서는 잣돈과 예전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대방이 호상소와 관련하여 작성한 세 가지 유형의 장부인 『호상소상용책』, 『호상소차하책』, 『호상소전장등록』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1863년까지 소급하는 정보를 통해 1900년에 면주전의 호상소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잣돈 및 예전의 규모와 장기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크게 보아, 면주전의 『호상소상용책』은 대방이 호상소로부터 수취한 잣돈의 관리 기록이며, 『호상소차하책』은 대방이 호상소에 지급한 예전의 관리 기록이다. 6개월마다 정산이 되었으나, 그 구체적 정산의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호상소전장등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면주전의 호상소에 대한 운영 및 관리하는 조비계, 백사계, 수주이소 등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종합하자면, 면주전의 잣돈 및 예전 운영이 1878년의 규정 금액 변경과 1894년의 갑오개혁이라는 변화를 맞이하고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면주전이라는 단체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상호 합의한 수취와 지급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며 제도를 유지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잣돈과 예전이 대내적으로 적용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면주전의 조달 기능이나 상인 단체로서

의 면모와 관계없이, 공제를 위한 단체로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호상소전장등록』에 등서된 『호상소전장발기』에서 族仍留人 이하의 내역은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잣돈이나 예전에 관계된 것이 아닌, 일종의 금융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를 통해 서지적 특징과 대략적인 운영 양상은 고찰된 바 있으나, 수량 분석을 통한 장기 변동의 파악은 아직 미진하다. 면주전 대방의 금융 활동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에서 상론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주제어 : 면주전, 대방, 호상소, 잣돈, 예전, 조선후기

투고일(2022. 1. 31), 심사시작일(2022. 2. 9), 심사완료일(2022. 2. 23)

〈Abstract〉

Management of Chaetton and Yejön by the Taebang of Myōnjujön
in Late Chosōn Korea: Focusing on the Case of Hosangso

Young-Jun Cho*

Taebang was at the center of the management of myōnjujön. Taebang received money from its members and paid money to them through hosangso, chobigye, paeksagye, and sujuiso. The money was both chaetton and yejön.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the management of chaetton and yejön, three types of account books written by Taebang in relation to hosangso, such as hosangso sangyongch'aek, hosangso ch'ahach'aek, and hosangso chōnjangtūngnok, were empirically analyzed. The volume of chaetton and yejön and their long-term trend was identified from 1863 to 1900, when hosangso of myōnjujön was disappeared into history.

Hosangso sangyongch'aek was the account book of chaetton management and hosangso ch'ahach'aek was the account book of yejön management. Calculation in red letters was made every six months, but in order to know the specific calculation process, we must check hosangso chōnjangtūngnok. The management of hosangso by myōnjujön can be commonly applied to chobigye, paeksagye, and sujuiso. The management of chaetton and yejön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even after the amendment of regulations in 1878 and the Kabo Reform in 1894.

Considering that both chaetton and yejön were applied internally to the members of myōnjujön, it can be evaluated that myōnjujön had been continued as a cooperative association regardless of its procurement function or the aspect of a merchant organization.

Key Words : myōnjujön, taebang, hosangso, chaetton, yejön, late Chosōn Korea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